

2025. 4. 2. 실시 재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	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(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§4, §60의2①, 규§2①②
		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	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규§51①②, 규§26의2③
'24. 12. 3.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국회의원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선거일 전 12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	법§60의2①
'24. 12. 20.부터	금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	법§60의2①
'25. 1. 2.까지	목	각급선거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리·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)이내)까지	법§60②
1. 19.부터	일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군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60의2①
2. 1.부터 4. 2.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86②
3. 3.까지	월	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	선거일전 30일[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]까지	법§53②③
3. 11.부터 3. 15.까지	화 토	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	법§37, 규§10 법§38, 규§11 법§65⑤
3. 13.부터 3. 14.까지	목 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§49, 규§20
3. 19.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§64②, 규§29④
3. 20.	목	선거기간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§33③
3. 21.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	법§65⑥, 규§30⑤
3. 21.	금	선거벽보 첨부	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	법§64②, 규§29②⑤
3. 21.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	법§44①
3. 23.까지	일	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65⑥, §154①⑤, 규§77 법§65⑥, §153①, 규§76
3. 26.까지	수	사전투표참관인 선정·신고	선거일전 7일까지	법§162②, 규§3③
3. 28.부터 3. 29.까지	금 토	사전 투표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§155②, §158
3. 31.까지	월	투·개 표참관인 선정·신고	선거일전 2일까지	법§161②, 법§181②③
4. 2.	수	투 표 (오전 6시 ~ 오후 8시) 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	선거일	법 제10장 법 제11장
4. 14.까지	월	선거비용 보전청구	선거일후 10일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까지	법§122의2①, 민§161, 규§51의3①
6. 1.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후 60일이내	법§122의2①, 규§51의3②